

제316회 정례회
2012. 12. 2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행정문화위원회

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20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2년 12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12월 6일
- 라. 상정일자 : 2012년 12월 13일

(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강호동)

가. 제안이유

- 경제부지사 운영, 한시기구 조정, 세종사무소 운영,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 기구조정 >

- 정무부지사 → 경제부지사(안 제4조)

- 바이오밸리추진단(한시) → 바이오산업국(안 제5조 및 제13조)
- 충청북도서울사무소 → 충청북도세종사무소(안 제56조의2)
- 옥천소방서 신설(별표 2)

< 분장사무 조정 등 >

- 행정부지사,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(안 제4조)
 - 행정부지사 정무 기능 신설
 - 경제부지사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 신설 등
- 균형건설국 사무 조정(안 제12조)
 - 혁신도시 관련 사무 삭제(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)
- 소방본부 사무 신설(안 제14조)
 -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 -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 -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- 충청북도세종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사무 조정(안 제56조의2, 제56조의4)
 - 관할구역 조정 : 수도권 → 세종특별자치시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관내 → 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
 - 국회·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·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
- 남부출장소 내수면어업 지원 사무 신설(안 제62조)
 -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

○ 소방서 관할구역 변경(별표 2)

- 청주서부소방서, 영동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및 옥천소방서 신설

< 그 밖의 개정내용 >

○ 행정기구 설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8조)

- 자치연수원 설치 근거법령 조항 정비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5조 →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

○ 타 조례 개정

- 상임위 소관 국 명칭변경(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)
-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국 명칭변경(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)
- 제명 변경(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)
- 행정부지사,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타 조례 개정 등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한철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경제부지사 운영, 한시기구 조정, 세종 사무소 운영, 소방기구 신설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구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 내용은,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, 한시기구인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바이오산업국으로, 충청북도서울사무소를 충청북도 세종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, 옥천소방서를 신설하는 등 기구조정과 기구조정에 따라 행정부지사 정무기능신설, 경제부지사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 신설 등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 조정, 소방본부 사무 신설, 충청북도세종사무소의 소재지변경 및 사무 조정, 소방서관할구역 변경 등과
- 자치연수원 설치근거 법령의 조항을 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」 제5조에서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로 변경하고, 조례 개정에 따라 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정무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
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 중 “바이오밸리추진단”을 “바이오산업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0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 제목 “(바이오밸리추진단)”을 “(바이오산업국)”으로 하고, 각호 외의 부분 중 “바이오밸리추진단장”을 “바이오산업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에 제4호부터 제7호를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, 제9호,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
9. 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1항 중 “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」 제5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4장제8절의 제목 “충청북도서울사무소”를 “충청북도세종사무소”로 한다.

제56조2제1항 중 “수도권”을 “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세종시”라 한다)”로, “충청북도서울사무소”를 “충청북도세종사무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관내”를 “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”으로 한다.

제56조의4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 중 “중앙행정기관”을 “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”으로 한다.

제6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

별표 2의 충청북도청주서부소방서란 중 관할구역 “청원군 중 옥산면, 강내면, 강외면, 남이면, 부용면, 현도면 일원”을 “청원군 중 오송읍, 옥산면, 강내면, 남이면, 현도면 일원”으로 하고, 충청북도영동소방서란 중 관할구역 “영동군, 옥천군 일원”을 “영동군 일원”으로 하며, 충청북도제천소방서란 아래 충청북도 옥천소방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명칭	위치	관할구역
충청북도 옥천소방서	옥천군 관내	옥천군 일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“청주시·청원군통합추진지원단”을 “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바이오밸리추진단”을 “바이오산업국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의 경제분과란 중 부서 “바이오밸리추진단”을 “바이오산업국”으로 한다.

③ 「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명 중 “정무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④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⑤ 「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⑥ 「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⑦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⑧ 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⑨ 「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⑩ 「충청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⑪ 「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⑫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⑬ 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⑭ 「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⑮ 「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경제부지사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<u>정무부지사를</u> 둔다.</p> <p>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<u>다만,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</u>)</p> <p>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</p> <p>2.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</p> <p>3. 정부·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</p> <p>4. 정당·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</p> <p>5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</p> <p>6.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</p> <p>7.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</p> <p>8.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	<p>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<u>경제부지사를</u> 둔다.</p> <p>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</p> <p>3. <u>정부, 국회, 언론,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<u>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 <p>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1. 경제, 건설,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</p> <p>2. 의회, 정부, 국회, 언론, 정당,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</p> <p>3. <u>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
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<u>바이오밸리추진단</u>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(이하"통합추진지원단"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	<p>제5조(실·국·단·본부의 설치)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, 행정국, 보건복지국, 경제통상국, 농정국, 문화관광환경국, 균형건설국, <u>바이오산업국</u>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(이하"통합추진지원단"이라 한다),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공공기관 이전·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</u></p> <p>11. ~ 30. (생략)</p>	<p>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<삭 제></u></p> <p>11. ~ 30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<u>바이오밸리추진단</u>) <u>바이오밸리추진단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	<p>제13조(<u>바이오산업국</u>) <u>바이오산업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소방본부)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·조정</p> <p>2. 소방공무원교육·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</p> <p>3.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 화재의 예방·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</p> <p>5. 구조·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</p> <p>6.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7.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조(소방본부)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·조정</p> <p>2. 소방공무원교육·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</p> <p>3.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</p> <p>4. <u>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화재의 예방·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</p> <p>6. 구조·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</p> <p>7.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8.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9. <u>소방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 <u>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18조(설치) ① 법 제113조와 「<u>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</u>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둔다.</p>	<p>제18조(설치) ① 법 제113조와 「<u>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</u>」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둔다.</p>
<p>제8절 <u>충청북도서울사무소</u></p> <p>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<u>수도권</u>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<u>충청북도서울사무소</u>(이하 “사무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사무소는 <u>서울특별시 관내</u>에 둔다.</p>	<p>제8절 <u>충청북도세종사무소</u></p> <p>제56조의2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<u>세종특별자치시</u>(이하 “세종시”라 한다)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<u>충청북도세종사무소</u>(이하 “사무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p> <p>② 사무소는 <u>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</u>에 둔다.</p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56조의4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회·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·지원에 관한 사항 2.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.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.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 	<p>제56조의4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삭 제> 2. 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3.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.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<p><신 설></p>	<p>제62조(소관사무)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.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(농업, 환경, 전기, 산림, 광업분야 등) 처리에 관한 사항 3.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. 대청호, 금강수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(제29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2 1368 783 2029"> <thead> <tr> <th>명칭</th> <th>위치</th> <th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</td> <td>청주시 관 내</td> <td>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</td> <td>청주시 관 내</td> <td>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옥산면, 강내면, 강외면, 남이면, 부용면, 현도면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충주소방서</td> <td>충주시 관 내</td> <td>충주시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제천소방서</td> <td>제천시 관 내</td> <td>제천시, 단양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영동소방서</td> <td>영동군 관 내</td> <td>영동군, 옥천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증평소방서</td> <td>증평군 관 내</td> <td>증평군, 괴산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진천소방서</td> <td>진천군 관 내</td> <td>진천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음성소방서</td> <td>음성군 관 내</td> <td>음성군 일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	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옥산면, 강내면, 강외면, 남이면, 부용면, 현도면 일원	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	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, 단양군 일원	<신 설>			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, 옥천군 일원	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, 괴산군 일원	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	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	<p>[별표 2] 소방서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(제29조제2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10 1368 1422 2029"> <thead> <tr> <th>명칭</th> <th>위치</th> <th>관할구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</td> <td>청주시 관 내</td> <td>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</td> <td>청주시 관 내</td> <td>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오송읍, 옥산면, 강내면, 남이면, 현도면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충주소방서</td> <td>충주시 관 내</td> <td>충주시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제천소방서</td> <td>제천시 관 내</td> <td>제천시, 단양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옥천소방서</td> <td>옥천군 관 내</td> <td>옥천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영동소방서</td> <td>영동군 관 내</td> <td>영동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증평소방서</td> <td>증평군 관 내</td> <td>증평군, 괴산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진천소방서</td> <td>진천군 관 내</td> <td>진천군 일원</td> </tr> <tr> <td>충청북도 음성소방서</td> <td>음성군 관 내</td> <td>음성군 일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칭	위치	관할구역	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	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오송읍, 옥산면, 강내면, 남이면, 현도면 일원	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	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, 단양군 일원	충청북도 옥천소방서	옥천군 관 내	옥천군 일원	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 일원	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, 괴산군 일원	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	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옥산면, 강내면, 강외면, 남이면, 부용면, 현도면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, 단양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 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, 옥천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, 괴산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칭	위치	관할구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원군 중 내수읍, 북이면, 남일면, 가덕면, 문의면, 낭성면, 미원면, 오창읍 일원, 보은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원군 중 오송읍, 옥산면, 강내면, 남이면, 현도면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, 단양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옥천소방서	옥천군 관 내	옥천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, 괴산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③ ~ 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3조 (부시장·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는 시·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,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해당 시·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시장·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시장·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

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부 칙(2010. 12. 31 조례 제332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)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2년12월31일까지로 한다.